

검토보고

행정기획위원회(환경과)

의안번호	제 79 호
제 출 자	정운주의원 외 14명 (2022. 11. 10.)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안
검 토	전문위원 정진만

1. 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의 증진과 성북구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 나. 구청장, 공공기관 및 국민의 책무 규정(안 제4조~제6조)
- 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 규정(안 제8조~제11조)
- 라. 성북구 2050 탄소중립 위원회의 규정(안 제12조~제16조)
- 마. 온실가스 감축 사업 및 규정 (안 제 17조~제22조)
- 바.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규정(안 제23조~제2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나. 협조부서 : 환경과

다.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라. 입법예고 : 2022. 11. 10. ~ 2022. 11. 15.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021. 9. 24. 공포, 2022. 9. 2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 2021년 9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폐지하는 대신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되었는 바, 「탄소중립기본법」은 온실가스 부문별·단계별 감축 목표 설정·이행 등을 포함한 기후위기 대응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등의 역량을 강화하며, 국제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의무 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음.
- 성북구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명시하여 2012년 3월 29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실가스 감축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였으나, 상위법령의 폐지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라 금번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 안 제3조**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기본원칙을 규정함.

▪ **안 제4조 ~ 안 제6조 : 구청장 · 공공기관 · 구민의 책무**

- 기본원칙을 시행하기 위해 구청장과 공공기관, 주민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는 바, 공공기관과 구민이 더 이상 단순 참여자가 아닌 주체가 되어 탄소중립 전환사회로의 더 많은 역할과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8조 ~ 안 제11조 :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기본계획 수립 등**

-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하여 성북구 차원에서 탄소중립비전 달성을 위한 중장기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성북구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 연도별 감축목표의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 **법 제12조1)**에 따라 1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는 성북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 시행 하도록 함.
-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및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 · 정량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규정함.

▪ **안 제12조 ~ 안 제16조 : 성북구 2050 탄소중립 위원회²⁾ 구성**

- 1) 「탄소중립기본법」 제12조(시·군·구 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기본계획, 시·도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 「탄소중립기본법」 제22조(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③ 지방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탄소중립 실현을 추진하고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성북구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
- 위원회의 구성 :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연 2회 정례회를 실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불가피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도록 규정.
-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준용

▪ **안 제18조 ~ 안 제22조 : 온실가스 감축 시책 및 기후위기 적응 대책**

- 관내 신·재생에너지 전환 시책³⁾을 수립·시행하고 관련된 시설 보급에 노력하도록 하며,
- 자동차 사용 자제를 유도하는 등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⁴⁾을 마련하도록 하고, 집행부가 관용차량을 구매 할 경우 친환경차를 우선

3) 「탄소중립기본법」 제30조(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①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별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전환 지원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4) 「탄소중립기본법」 제32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정부는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교통체계로서의 녹색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설정·관리하고 내연기관차의 판매·운행 축소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구매하도록 함.
- 탄소 흡수원⁵⁾ 등을 조성·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수행하도록 함.
 - 폐기물 발생량 감축 정책을 발굴·추진하도록 규정함.
- **안 제23조 :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
 - **안 제24조 : 구청장은 법 제65조에1항⁶⁾에 따른 탄소 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안 제25조 : 탄소중립 실천 단체 등에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26조 :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등**
 - **법 제68조제1항⁷⁾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운영 할 수**

5) 「탄소중립기본법」 제33조(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① 정부는 산림지, 농경지, 초지, 습지, 정주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숲 등에서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저장(흡수된 온실가스를 대기로부터 영구 또는 반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탄소흡수원 및 그 밖의 바이오매스 등(이하 “탄소흡수원등”이라 한다)을 조성·확충하거나 온실가스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6) 「탄소중립기본법」 제65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구성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발적인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참여하는 탄소중립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7) 「탄소중립기본법」 제68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있도록 함.

- **안 제27조** : 5년마다 탄소중립백서를 작성 공표하도록 함.
- **안 제28조** : 소관부서 국장급 이상을 구의 탄소중립 이행책임관으로 함.
- **부칙 안 제2조 ~ 안 제3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실가스 감축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및 종전 조례에 따라 수립된 기후위기 적응대책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으로 봄.

○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시행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폐지에 따른 기존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실가스 감축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체 조례로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함으로써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구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해당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도·시책 추진 근거를 적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의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에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